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851
----------	------

2025년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5. 5.26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5. 5.29

4. 상정일자 :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23)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25. 6.26)

-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¹⁾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 의안번호 제2843호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14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한 제안설명으로,
- 14개 변경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예치금회수액을 2025회계연도 예치금으로 증감 반영하는 등 재무활동을 3,855억원 증액 하였으며
- 도시재생기금, 공공시설등설치기금 등 5개 기금에서 정책사업비를 1,663억원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를 3천 4백만원 증액 편성하고자 함

1) 일괄 제안설명에 따라 개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차이가 있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이유

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증가함에 따라 2025년 수입·지출계획이 변경됨

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2025회계연도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 금액이 당초 9,259백만원에서 14,710백만원으로 5,451백만원 증가함에 따라, 지출계획상 여유자금 예치액을 5,451백만원 증액하여야 함

나. 그러나, 1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심의('25.2.27)로 사업비 증액 및 신규사업 편성 등 정책사업비를 3,303백만원에서 3,345백만원 증액, 예치금을 4,923백만원에서 4,881백만원으로 감액한 바 있음(20% 미만 변경)

다. 이에, 지출계획상 여유자금 예치액을 당초 4,923백만원에서 10,332백만원으로 5,409백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함(20% 초과 변경)

[수입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 (A)	변경 (B)	증감 (C=B-A)	증감률 (D=C/A)
합 계		18,231	23,682	5,451	29.9
세외수입		1,614	1,614	-	-
경상적세외수입		432	432	-	-
	이자수입	432	432	-	-
임시적세외수입		33	33	-	-
	보조금반환수입	33	33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49	1,149	-	-
	과징금	1,149	1,149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6,617	22,068	5,451	32.8
보전수입등		14,866	20,317	5,451	36.7
	융자금원금수입	5,607	5,607	-	-
	예치금회수	9,259	14,710	5,451	58.9
내부거래		1,751	1,751	-	-
	예탁금및예수금	1,751	1,751	-	-

[지출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정책사업명)	당초 (A)	1차 변경	2차 변경 (B)	증감 (C=B-A)	증감률 (D=C/A)
합 계	18,231	18,231	23,682	5,451	29.9
식품안전 위생관리	3,303	3,345	3,345	42	1.3
위생관리시설개선 용자사업	1,500	1,500	1,500	-	-
교육·홍보사업	451	451	451	-	-
식중독 예방사업	185	185	185	-	-
음식문화개선사업	249	269	269	20	8.0
식품안전관리사업	565	565	565	-	-
조사 연구 평가 사업	353	375	375	22	6.2
행정운영경비	5	5	5	-	-
기금관리비	5	5	5	-	-
재무활동	14,923	14,881	20,332	5,409	36.2
내부거래지출	10,000	10,000	10,000	-	-
보전지출	4,923	4,881	10,332	5,409	109.9
여유자금 예치	4,923	4,881	10,332	5,409	109.9

3. 검토의견²⁾

- 서울특별시는 지난 1989년, 식품의 위생을 강화하고, 시민의 영양수준을 향상하고자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가 54억 5,100만원 증가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고,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도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식품진흥기금)**에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재원중 54억 900만원을 증액하고, 다른 정책사업인 **식품안전 위생**

2) ■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 증감률 등의 경우,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은 절사함에 따라 일부(±0.1% 범위내) 차이 있음

관리에도 4,2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 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³⁾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4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수입계획에 반영하고, 이와 연동된 지출계획에도 여유자금 예치와 세부사업에 대한 추가재원을 지출계획한 것으로

- 지출계획의 정책사업인 **일반예산(재무활동)**은 당초 지출계획(149억 2,300만원)보다 36.2%, 54억 9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되나,

- 또 다른 정책사업인 **식품안전 위생관리**는 음식문화개선사업(2,000만원 증액)과 조사 연구 평가사업(2,200만원 증액)에 4,2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은 당초 지출계획(33억 300만원)보다 1.3%, 4,200만원 증액되는 것이기에 의회의 의결이 불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다른 정책사업의 세부사업에 일부 증액하여 지출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운용중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수·지 균형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명시된 동 기금의 용도⁴⁾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2.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

가. 소위원회

- 위원구성 :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11명)
 - 위 원 장 : 최민규(도시안전건설)
 - 부위원장 : 김경훈(교육), 정준호(교통)
 - 위 원 : 서호연(행정자치), 홍국표(기획경제)

4)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등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 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3. 식품위생과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사업
8. 그 밖에 식품위생, 시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9.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이용균(환경수자원), 아이수루(문화체육관광)

도문열(보건복지), 봉양순(도시안전건설)

김종길(주택공간), 김원태(도시계획균형)

※ '25년도 본예산 심사시 구성된 소위원회로 계속 운영

나. 소위원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2025. 6.26(목) 12:00~13: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내 용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조정

VII. 부대의결 : 「해당 없음」

VI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2025. 6.26)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2851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증가함에 따라 2025년 수입·지출계획이 변경됨
- 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2025회계연도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 금액이 당초 9,259백만원에서 14,710백만원으로 5,451백만원 증가함에 따라, 지출계획상 여유자금 예치액을 5,451백만원 증액 하여야 함
- 나. 그러나, 1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심의('25.2.27)로 사업비 증액 및 신규사업 편성 등 정책사업비를 3,303백만원에서 3,345백만원 증액, 예치금을 4,923백만원에서 4,881백만원으로 감액한 바 있음(20% 미만 변경)
- 다. 이에, 지출계획상 여유자금 예치액을 당초 4,923백만원에서 10,332백만원으로 5,409백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함(20% 초과 변경)

[수입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 (A)	변경 (B)	증감 (C=B-A)	증감률 (D=C/A)
합 계	18,231	23,682	5,451	29.9
세외수입	1,614	1,614	-	-
경상적세외수입	432	432	-	-
이자수입	432	432	-	-
임시적세외수입	33	33	-	-
보조금반환수입	33	33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49	1,149	-	-
과징금	1,149	1,149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6,617	22,068	5,451	32.8
보전수입등	14,866	20,317	5,451	36.7
융자금원금수입	5,607	5,607	-	-
예치금회수	9,259	14,710	5,451	58.9
내부거래	1,751	1,751	-	-
예탁금및예수금	1,751	1,751	-	-

[지출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정책사업명)	당초 (A)	1차 변경	2차 변경 (B)	증감 (C=B-A)	증감률 (D=C/A)
합 계	18,231	18,231	23,682	5,451	29.9
식품안전 위생관리	3,303	3,345	3,345	42	1.3
위생관리시설개선 융자사업	1,500	1,500	1,500	-	-
교육·홍보사업	451	451	451	-	-
식중독 예방사업	185	185	185	-	-
음식문화개선사업	249	269	269	20	8.0
식품안전관리사업	565	565	565	-	-
조사 연구 평가 사업	353	375	375	22	6.2
행정운영경비	5	5	5	-	-
기금관리비	5	5	5	-	-
재무활동	14,923	14,881	20,332	5,409	36.2
내부거래지출	10,000	10,000	10,000	-	-
보전지출	4,923	4,881	10,332	5,409	109.9
여유자금 예치	4,923	4,881	10,332	5,409	109.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윤혜주 (☎ 2133-4718)